



농림부 통상협력과
/ 김수현 수의사

제13차 Codex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 참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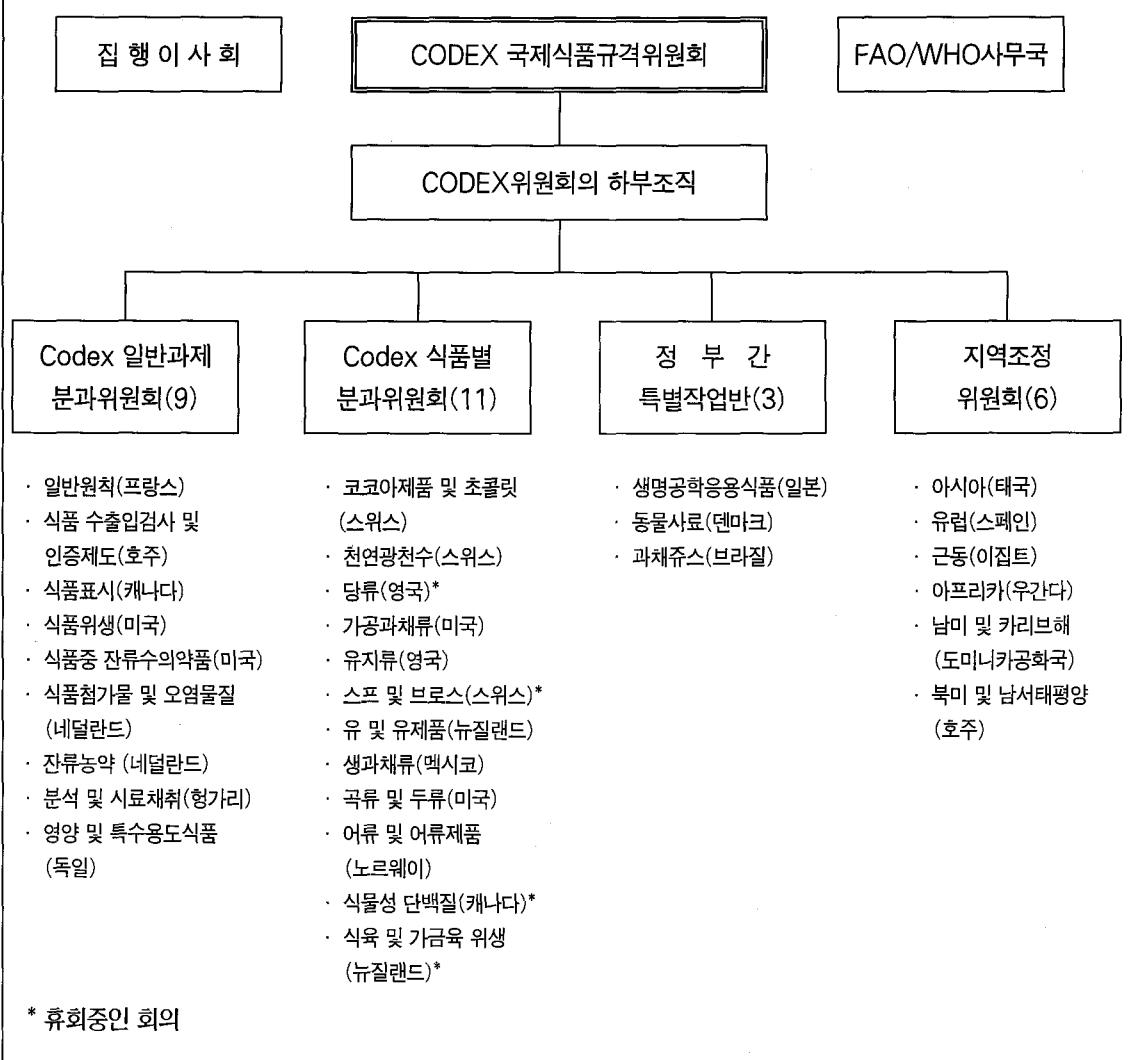
대한수의

I. 서 론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란 ?

- 1962년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02.10월 기준 회원국은 165개국임
 - 설립 : 1962년(우리나라 70년, 북한 81년 가입)
 - 예산 : '98/'99년 약 5.516천불(FAO 75%, WHO 25% 담당)
- 사무국은 이태리 로마의 FAO본부내에 위치하고, 그 하부조직에 일반 과제 분과위원회(9개), 식품별 분과위원회(11개), 정부간특별작업단(3개) 및 지역조정위(6개)가 있음
- 의사결정 절차
 - 전원일치제(Concenses)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시는 다수결에 의함
 - 의사결정절차는 통상 8단계로 이루어지나 긴급을 요할 시 5단계로 기준 제정
- Codex기준의 의미
 - WTO가 인정하는 국제식품기준으로써 통상적으로 회원국 등의 권고 기준으로 활용되나 식품의 국제 교역시 통상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공인기준으로 적용됨.
- 그 주요임무는 식품의 소비, 생산, 가공처리, 유통, 관리 및 교역에 있어 국제적인 기본규약을 제공
 - 국제적인 정부간 및 비정부간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식품규격화 작업의 조화 촉진, 식품규격안 작업의 개시 및 지도.
 - 식품규격을 확정, Codex 지역규격 또는 Codex 세계규격화 및 개정
- 우리나라는 관련부처 합동으로 매년 약 10개회의 참석 및 의견제출
 - 관련부처
 - 농림부 : 한국대표(Contact point, 농림부 통상협력과장)로써 부처별 의견 취합 및 사무국과 접촉 창구 역할 수행
 - 복지부, 식약청 : 우리나라 식품규격기준 제정(축산물 제외) 담당
 - 해양수산부 : 수산물관련 품목 담당부서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조직도〉



◆ Codex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는 ?

- Codex 하부조직인 지역조정위중 하나로, 회원국은 총 21개국임
 - 1977년 인도 뉴델리 1차회의를 시작으로 평균 2년마다 개최
- 그 담당 업무의 범위는
 - 식품의 규격 및 식품의 관리와 관련된 당 지역의 문제점 및 필요사항의 한계 설정

제13차 Codex 참석결과

- 예정된 규제안 및 식품관리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식품관리 기반구조의 강화 촉진을 위한 조정위원회 내에서의 접촉의 촉진
- 앞으로 국제적인 시장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조정위원회가 생각하는 품목을 포함하여, 그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품목에 대한 범세계 적용 규격의 설정을 위한 총회에의 권고
- 제한적으로 또는 거의 제한적으로 그 지역내에서만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에 대한 지역 규격의 추진
- 총회의 업무중 특히 동 지역에 중요한 과제의 모든 면에 대한 총회에의 관심 촉구
- 그 지역내의 국제적 정부 및 비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지역 식품 규격 작업에 대한 조정의 촉진
- 그 지역을 위한 일반적인 조정 역할 및 총회가 위임한 기타 기능의 수행
- 회원국의 Codex 규격 및 잔류물질의 최대허용기준 수락의 촉진



대한수

Ⅱ. 제13차 Codex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 회의결과

- 금번 회의는 본 위원회 조정관 수임국인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2002.9.16~9.20일 까지 개최되었다.
- 우리나라는 농림부 통상협력과 수의주사 김수현,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보건주사보 김종수,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연구위원 권우정,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과 연구사 장재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정원 박사, (주)농심 연구개발부 부장 고민호 등이 참석 하였다.
- 본 회의에는 18개 회원국(총 21개 회원국중 북한, 몽고, 미얀마 불참), 3개 참관국 및 국제소비자연맹 등 8개 기구에서 총 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제13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의 주요의제 아래와 같다.

의제번호	의제
1	의제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2	24차 총회와 49차 및 50차 집행이사회에서 제기한 문제
3	FAO/WHO 합동식품규격프로그램 평가
4	중기계획(초안) 검토
5	즉석면 규격초안(4단계)
6	“Traceability/Product Tracing” 검토
7	기능성 식품 및 신개발식품에 관한 검토문서
8	식품규격 및 규정에 대한 가능성 설정
9	Codex 규격승인을 포함한 식품관리 및 식품위생문제 관련 정보
10	Codex 및 국가수준의 규격설정작업에 소비자의 참여
11	지역조정관의 지명
12	기타사업, 향후작업과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13	보고서 채택



◆ 의제별 주요 논의 결과

가. 의제채택

-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는 기회를 놓친 13개 참정의제와 회원국이 추가로 제안한 비발효 콩제품에 대한 신규 규격화 필요성 제안(중국), 클로람페니콜의 수산물에 최대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성(인도네시아), 코코넛제품에 대한 규격 초안 검토(필리핀) 등을 6개 의제를 추가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 키로 함

나. 24차 총회와 49차 및 제50차 집행이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논의

- Codex 규격 제정과정에 개도국 참여 장려를 위한 기금운영(Trust Fund)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여타 Codex 분과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한 진행사항 소개와 여타 회원국 및 사무국의 협조를 요청함
 - 태국은 간장에서의 3-MCPD 최대잔류허용치 1mg/kg 설정 지지를 요청, 동 위원회는 동 기준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소비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노출량 평가에 관한 추가자료(간장 섭취량 및 3-MCPD수준) 수집 필요성 언급
 - 말레이시아 및 태국은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HACCP적용 지침서는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인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강조
 - 인도는 식품의 국제교역시 적용되어야 할 윤리규범 문제제기, 사무국은 일반원칙 분과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을 지적
 - 인도는 위해분석작업원칙의 하나인 공정무역행위 확보에 대해 언급하고, 동 원칙의 세부절차를 개발을 제안, 사무국은 중기계획 반영 예동의
 - 인도네시아는 Sweet Soy Sauce 규격 필요성을 제안, 추후 Codex 가공과채류 분과위원회에 규격안을 제출예정임을 설명
 - 인도네시아는 Palm kernel oil 등 식용 유지의 적재, 보관, 수송, 하역시 유지온도 변경을 제안, 사무국은 관련분과위에 이를 전달키로 함
 - 필리핀은 가공과채류 분과위에서 논의중인 코코넛 제품 규격초안에 대한 변경을 제안(말레이시아 지지)
 - 중국은 식품첨가물 일반기준(GSFA: General standard for food additives) 중 식품분류체계에서 현행과 같이 soybean products를 별도로 분류할 것을 주장(태국 등이 지지), 사무국은 회원국에 동제품의 정보를 관련분과위에 제출할 것을 요청

다. FAO/WHO 합동 식품규격프로그램 평가

- 사무국은 향후 Codex, FAO 및 WHO의 식품정책, 전략, 관리수준 결정 관련 작업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회원국의 Codex 기준 사용실태 등에 대한 서면·현지조사를 실시중임을 설명
 - 서면조사는 각 회원국에 설문서를 송부하여 102 회원국(아국 포함)과 60개 비정부기구로부터 답변 접수
 - 평가팀을 24개 회원국과 EC 등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실시

- 지역조정위원회는 2003.2월 중순에 개최예정인 특별총회에서 논의예정인 평가보고서(안)을 회원국에 소개,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밝히고, 관심있는 회원국의 참여가 가능함을 언급

라. Codex 중기 사업계획안(2003-2007년) 검토

- 사무국은 향후 Codex 중기 사업계획안(5개분야 34개 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2003년 개최예정인 제25차 Codex 총회에서 논의시 반영, 이를 확정키로 함

마. 즉석면류 Codex 규격초안 논의

- 본부 대표단은 일본 및 아세안 국가와 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즉석면류 규격초안을 검토한 바, 동 결과 아국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동 규격(합의된 규격안 별첨)논의가 5단계(종전 3단계)로 이관되게 되었음.
- 즉석면류의 범위, 정의, 표시 및 품질규격에 대해서는 우리측 입장이 모두 반영된 즉석면류 규격안에 합의함
- 다만, 품질규격중 과산화물가(POV)에 대하여는 일본이 기준 설정을 강력히 주장, 일단 브라켓 처리하고 계속 논의키로 함.

바. 추적성 및 제품추적에 대한 검토

- 사무국은 개도국 입장을 수용, 추적성에 대해 포괄적 적용보다는 사안별로 엄격히 적용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Codex 일반원칙 분과위원회에 제출키로 함

사. 기능성 및 신개발식품(생물공학기술 응용식품 제외)에 대한 검토문서 토의

- 말레이시아는 기능성 및 신개발식품에 대한 신규규격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토의 문서를 발표, 여타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함
- 우리나라의 새로이 제정된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법률』등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아국의 제도를 소개함
- 조정위원회는 FAO 및 WHO가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아시아 전문가 포함)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함

아. 식품규격 및 규정 운영을 위한 능력배양

- FAO 및 WHO는 개도국의 식품규격 및 규정 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중임을 소개
 - 옵서버인 소비자단체(CI)는 FAO 및 WHO가 주최하는 Workshop 등에 소비자 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 사무국은 FAO 및 WHO에 개도국의 동 능력배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

자. 회원국의 식품관리 및 식품위생문제

- FAO 및 WHO가 식품관리 및 식품안전관련 활동 및 법령과 각 회원국의 식품안전 제도 등 보고가 있었음
 - 우리나라의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표시제도 등 아국의 식품안전관리 제도 등을 소개

차. Codex 및 국가수준의 규격설정 작업에 소비자의 참여

- 사무국은 식품안전관련 규정 설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Codex 및 국가차원의 규격설정 등 관련업무 수행시 소비자 및 민간분야의 참여를 격려하고 있음을 소개, 회원국은 자국의 사례를 발표함
 -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관련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식품위생 심의위원회』등에 소비자 단체가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을 설명

카. 차기회의 아시아지역 조정관 선출

- 동 관리, 당초 입후보 의사를 밝혔던 인도 및 인도네시아가 입후보를 철회하였고, 추가로 입후보 의사 를 밝힌 나라가 없어 일본 및 말레이지아 제의에 따라 2004년 개최 예정인 제14차 아시아 지역 조정 위원회를 개최·주재할 지역조정관으로 우리나라를 만장일치로 추천함.
- 아국 대표단은 본부 추가 훈령에 따라 동 지역 조정관 수임의사를 표명, 차기회의를 주관할 아시아지역 조정관으로 선출됨
 - 내년 6.30-7.5 로마에서 개최예정인 제25차 Codex 총회에서 공식 임명될 예정

타. 기타사업, 향후작업과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기타사업**

- 중국은 냉동 비발효 콩 제품에 대한 신규규격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조정위원회는 중국이 규격(안)을 제출할 경우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인도네시아는 클로람페니콜의 수산물(새우류)내 최대잔류허용치 설정을 제안, 사무국은 이에 대하여 이미 JECFA에서 동 항생물질에 대한 평가결과 무잔류 원칙을 결정한바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만약 새로운 과학적 타당성이 있다면 Codex 수의약품잔류분과위에 재 검토를 요청할 계획임을 언급

○ 향후 작업

- 냉동 비발효 콩 제품에 대한 신규규격 검토, Codex 및 국가수준의 규격설정 작업에 소비자의 참여, 식품규격 및 규정 운영을 위한 능력배양 등에 대하여 논의키로 함

○ 차기 회의일시 및 장소

- 사무국과 차기회의 아시아지역 조정관 임명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함

파. 기타사항

- 차기회의 아시아지역 조정관 수임 문제과 관련 사무국장과 면담실시
 - 임기는 내년 Codex 총회에서 공식 임명시('03.7월)부터 2년간 수임
 - 조정관은 일반적으로 국장급이 수행하고, 임무는 담당지역 총괄, 차기 회의 개최·주재(소요비용 일부 부담), 집행위원회 및 총회 등 참석
 - 회의개최에 따른 소요비용 문제는 공식 임명후 외교경로를 통해 추후 논의
 - 사무국장은 차기회의 아시아지역 조정관 수임 문제와 관련 아국이 공식 초청할 경우 방한하여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을 언급

○ 된장 및 고추장의 Codex 규격화 필요성 제안과 관련한 협조요청

- 제21차 Codex 가공과채분과위에서 논의예정인 된장 및 고추장의 신규 규격 필요성 제안과 관련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대표단과 접촉, 협조를 요청한바, 일본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의 구두 지지 약속을 받음
- 일본은 된장제품의 범위에 『미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는 등 아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Ⅲ. 금번회의에서의 우리나라의 주요 활동사항

○ 회원국 만장일치로 차기회의 아시아지역 조정관 수임

- 차기회의 조정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나라 관심의제 등을 개발, 차기 회의 의제로 논의추진

○ 즉석면류(일명 라면) 규격 제정 의사진행과 관련, 즉석면류의 범위, 정의, 표시 및 품질규격에 대해서는 우리측 입장을 모두 반영, 5단계로 이관

- 앞으로 식품첨가물 및 식품표시 Codex 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대비

○ 된장 및 고추장의 Codex 규격화 필요성 제안과 관련, 각 회원국에 지지 요청

○ 우리나라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표시제도 등 아국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식품(축산물 포함)위생 심의 위원회』등에 소비자 단체가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을 소개

○ 기능성 및 신개발식품에 대한 토의에 적극 참여, 아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기능성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 위원회가 FAO 및 WHO에 기능성 식품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권고 토록 일조함

Ⅳ. 결론

○ 식품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Codex기준이 각 국가 및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는 국제점 기준 및 지침이 결정되는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방영하는 것이 필요함

○ 앞으로, 차기회의 조정관 수임 예정국인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 조정관직 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적으로는 아국의 식품관리체계 국제화 및 식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지역 회원국을 대표, Codex 지침 및 기준 제·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대한수출
국제화
협력
원